

구립보육시설 재위탁불가통보 취소청구 재결

위탁기간 만료 후 재위탁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가 행정심판의 대상인 「처분」에 해당하는지

주문

청구인의 청구를 **각하한다.**

청구취지

피청구인이 2008. 6. 5.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구립보육시설재위탁불가통보처분은 이를 취소한다.

재결요지

보육시설의 위탁운영계약을 체결은 **대등한 지위의 계약**에 해당되는바, 어린이집에 대하여 **재위탁 약정체결 불가**를 통보한 행위는 **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** 부적법한 청구이다.

사건의 개요

피청구인은 위탁한 어린이집의 위탁기간(2005. 8. 2. ~ 2008. 8. 1.)이 만료됨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재위탁 신청을 심사하고, 2008. 6. 5. 재위탁 약정체결 불가를 통보(이하 '이 사건 처분'이라 한다)하였다.

인정 사실

- (가) 피청구인은 2008. 1. 11. 「2008년도 구립보육시설 재위탁계획(구청장방침)」을 수립하였다.
- (나) 피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위탁기간만료일(2008. 8. 1.) 도래에 따라 2008. 4. 16. 청구인에게 **재위탁 신청을 안내**하였고, 청구인은 2008. 5. 14. 피청구인에게 재위탁 신청서류를 접수하였다.
- (다) 2008. 5. 29. **보육정책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재위탁 신청을 심사하여 재위탁 기준 미달로 부적격임을 의결**하였다.
- (라) 이에 피청구인은 2008. 6. 5. 청구인에게 재위탁 약정체결 불가를 통보하였다.

판단

(가) 「행정심판법」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,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,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**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**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.

(나) 살피건대,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시설의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**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계약에 해당된다** 할 것으로, 이를 행정주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상대방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공권력의 행사로서 특정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,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**재위탁 약정체결 불가**를 통보한 행위는 **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**,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.

■ 당사자 주장 (요지)

청구인 — 위탁기간 동안 관련 법령 등을 철저히 준수하였고 보육시설 평가인증 등 탁월한 시설운동을 하였으며, 조례의 위탁 취소 사유에 위반한 사항이 없었음에도 일방적으로 재위탁 약정체결 불가 통보를 받았으므로 위법·부당하다.

피청구인 — **사법상의 위탁계약기간 만료**에 따라 심사를 거쳐 재위탁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것으로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며, 조례의 「**위탁의 취소**」 규정은 **약정기간 중에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**으로서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심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.

■ 결론

그렇다면, 청구인의 청구는 **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**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.

※ 이 문서는 재결문의 주문·청구취지·재결요지·사건개요·판단 부분의 발췌임. 재결문 원문에는 기관명과 시설명이 익명 처리되어 공개되어 있음.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음.